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 May 2018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록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IRS Looks to 2017 Law in Appealing \$2 Billion Amazon Tax Cas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7 pg. 11)

#### 미국 국세청, Amazon 과의 20억 달러 조세소송 관련 항소제기

지난 3 월 Internal Revenue Services (미국 국세청, 이하 "IRS")는 2017 년 패소한 Amazon.com Inc. (이하 "Amazon")과의 무형자산 양도대가 적정성 관련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거 IRS 는 Amazon 이 룩셈부르크 소재 특수관계자에 특허, 상표권, 고객리스트 등 무형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Amazon 미국 본사에 총 22 억 달러(약 2 조 3600 억 원)의 소득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IRS 와 Amazon 간에 조세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이전된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대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IRS 는 Amazon 이 특수관계자에 무형자산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가 35 억 달러(약 3 조 7600 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Amazon 은 216 백만 달러(약 2,300 억 원)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조세법원은 지난 2017년 3월에 해당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으로 Amazon 이 제시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method)이 합리적이며, IRS가 제시한 현금흐름할인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은 무형자산 가치판단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RS는 이에 항소하여 2018년 3월 30일에 항소의견서를 미국 조세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의견서에서 IRS는 2017년 개정된 세법 내용이 무형자산에 대한 IRS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세법원이 양도된 무형자산의 가치를 다루는 Tax code Section 482를 해석함에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mazon과 룩셈부르크 법인간의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향후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현금흐름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즉 현금흐름할인방법이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Amazon 미국 본사가 가지는 무형자산의 미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으며, 반면에 IRS가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방법은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Vietnam to Audit Intercompany Royalty Payments(Bloomberg TP Report vol. 27, no.8 pg. 25)

##### **베트남: 특수관계사간 로열티거래 조사**

베트남은 최근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다수의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수부족을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 강화의 원인으로 과세당국의 높은 징수세액 목표 및 2017년 도입된 BEPS 규정을 꼽았습니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2018년 세수 목표를 2017년에 비해 11% 높게 잡았습니다.

또한 Nguyen Xuan Phuc 총리는 지난 1월 연설에서 현지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비판하였고, 동 연설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가 권고하는 보고체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관세당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 즉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 입니다. 특히, 베트남 이전가격 조사관은 특수관계사간 로열티 거래를 우선시하며, 이외에도 제조, 기술지원 및 일반관리서비스 거래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자회사가 홍콩에 소재한 모회사에게 마케팅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거에는 이를 조사관에게 소명하는 것이 수월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를 조사관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베트남 관세당국이 특수관계거래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사가 세금감면 효과를 위하여 베트남 법인에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제한되고,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베트남 외 국가에 소득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 New Zealand: Post-import adjustments in pending customs legislation

##### **뉴질랜드: 수입 후 가격조정제도 추진**

뉴질랜드에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후 가격조정 제도에 변경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스템 하에서의 수입 후 가격조정은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인 조정신고 혹은 자발적인 공시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동 신고 혹은 공시가 받아 들여지면, 뉴질랜드 관세청은 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발행하고, 해당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GST(goods and service tax) 및 관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나 관세법이 개정되면, 수입 후 가격조정제도에 잠정가격(provisional value)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동 시스템 하에서 적격 수입업자(eligible importers)는 재화의 수입통관 시에 잠정가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가치가 확정되면 동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국적 그룹에 속한 수입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후 연말 이전가격조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운 관세 시스템 변경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잠정가격 시스템 자격 요건을 얻기를 원하는 수입업자는 하기 세 가지 그룹으로 분리되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은 수입업자
- 수입 시 확인이 어려운 특이사항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과 관련된 평가조정을 하는 수입업자

- 잠정가격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

첫 두 개의 그룹에 속한 수입업자는 잠정가격 제도를 적용할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수입업자는 반드시 뉴질랜드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잠정가격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고 수입 후 가격조정을 자발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면, GST 및 관세과소신고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India: Foreign Companies Spared From India's Global Tax Report Deadline\(Bloomberg TP Report vol. 27, no.7 pg. 24\)](#)

#### **인도에 자회사를 둔 외국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 미정**

인도 정부는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인 3 월 31 일에 앞서 인도에 자회사를 둔 외국기업들은 국가별보고서를 동 기한까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 월 23 일 인도 과세당국(India's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이하 "CBDT")의 발표에 따르면 3 월 31 일까지의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은 인도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인도에 자회사를 둔 외국기업의 경우 3 월 31 일이 아니며, 정확한 제출기한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같은 변경사항은 제출기한 내 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되는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가별보고서는 OECD 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프로젝트입니다. 동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하는 각 나라에서의 사업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의 연간 연결매출이 750 백만 EUR (약 9800 억 원) 이상인 기업들에 적용됩니다.

2017년 12 월 5 일 인도 정부는 국가별보고서를 국가 간 자동 교환하기 위해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for Automatic Exchange, 이하 "MCAA")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 국가가 MCAA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동 국가는 인도와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며, MCAA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동 국가는 인도와 양자간 조세협정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 국가가 MCAA에 가입하지 않았고, 인도와의 조세정보 공유에 대한 조세협정도 없다면, 인도에 소재한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갖습니다.

[Back to top](#)

---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